

 금융위원회	<h1>보도자료</h1>			• 미래창조 금융 • 따뜻한 금융 • 튼튼한 금융
	보도	1.13일 조간부터	배포	2017.1.12.(목)
책임자	금융위 은행과장 김진홍(02-2100-2950)	담당자	김성진 사무관 (02-2100-2951) 송현지 사무관 (02-2100-2954)	
	금융위 금융정책과장 이형주(02-2100-2830)		나혜영 사무관 (02-2100-2832)	
	금융위 전자금융과장 김연준(02-2100-2970)		김원태 사무관 (02-2100-2971)	
	금융위 신용정보팀장 고상범(02-2100-2620)		오유정 사무관 (02-2100-2621)	
	금융위 보험과장 손주형(02-2100-2960)		신상록 사무관 (02-2100-2961)	
	금융위 금융제도팀장 홍성기(02-2100-2840)		이은진 사무관 (02-2100-2841)	
	금융위 공정시장과장 이석란(02-2100-2680)		류성재 사무관 (02-2100-2693)	

제 목 : 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상세 브리핑 ①
 - 5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금융개혁을 상시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.

- 「2017년 금융위원회 전체 업무보고(1.5일)」에 이어, '17.1.12일 금융위 사무처장이 '금융개혁' 관련사항에 대한 상세 브리핑(1차)을 실시함
 - '금융발전심의회'를 중심으로 기존 과제 착근(이행점검)과 신규과제 발굴을 균형있게 추진하는 '상시 금융개혁 체제'로 전환하는 한편,
 - 우리 금융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들이 금융개혁을 보다 체감할 수 있도록 '5대 개혁과제*'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
- * ① 신탁업 제도 전면개편, ② 핀테크 2단계 발전방안 마련, ③ 보험업 경쟁력 강화방안, ④ 금융지주회사 경쟁력 강화방안, ⑤ 회계 투명성·신뢰성 제고방안
- ※ 금번 브리핑에 이어 **가계부채**(1.13일) → **금융취약계층 지원**(1.16일) → **실물경제 지원**(1.17일) → **자본시장 주요과제**(1.17일, 잠정) 관련 상세 브리핑을 순차적으로 실시 예정

< 첨부 > 상세 브리핑자료 ① : 금융개혁 주요 추진과제

		*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	금융위원회 대변인 prfsc@korea.kr	 넓게 들겠습니다 바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
---	---	---	---	--

참고 금융개혁 5대 중점과제 (요약)

과제명	주요 내용	추진계획
신탁업 제도 전면 개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진입규제 정비)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탁전문법인, 법무법인 등 새로운 플레이어 진입 촉진 • (운용 탄력성 확대) 생전·유언신탁, 유동화신탁 등 수요에 대응하여 수탁재산 범위 대폭 확대 • (수요자 접근성·편의성) 장기 재산관리신탁 등에 대해서는 광고규제 완화, 제한적 비대면 계약지시 허용 	('17.10월) 신탁업법 제정안 국회 제출
핀테크 2단계 발전방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3대 주요과제) 금융규제 테스트베드, 블록체인, 빅데이터에 중점을 두고 차질없이 추진 • (지원체계) 핀테크 지원센터 기능 강화, 민간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종합적인 핀테크 지원체계 구축 	('17.1분기)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 발표
보험업 경쟁력 강화 방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보험회사 역량 강화) 손보사의 사고위험.요율 평가·산출 역량 강화, 과도한 재보험 의존구조 개선 • (단종보험) 항공사의 여행자보험 판매 허용 등 보장내용이 단순한 소액보험의 가입 편의성 제고 • (전세금보장보험)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 가능, 보증요율도 인하 	(연내) 시행령, 감독규정 개정 등 제도 정비 추진
금융지주회사 경쟁력 강화 방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사전규제 폐지) 임직원 겸직 및 자회사간 업무위탁의 사전승인.보고를 사후보고로 전환 • (고객정보 공유) 영업목적의 고객정보 공유를 허용하되, 관리 강화를 위해 엄격한 사전.사후 책임 부과 • (운영방식 개선) IT·홍보·구매 등 후선업무 전담 자회사를 통한 업무통합 운영 허용→비용 시너지 제고 	(연내) 법령 개정 및 모범규준 제정 추진
회계 투명성·신뢰성 제고방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감사인 독립성 제고) 회계분식 발생시 영향이 크거나 분식 발생이 용이한 회사 등에 대한 자유수입 제한 • (이해상충 방지) 회계감사 대상회사에 대한 비감사용역 제공 금지대상을 국제적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 • (회계부정 제재 강화) 회계부정(분식회계·부실감사)에 대한 제재수준을 대폭 상향(예: 10년 이하 징역 등) 	('17.1월) 회계 투명성·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발표